

# 정 관

1958년 1월 7일 제정	1999년 2월 10일 개정
1964년 4월 27일 개정	2001년 2월 7일 개정
1974년 3월 2일 개정	2002년 3월 28일 개정
1977년 4월 2일 개정	2005년 3월 22일 개정
1979년 4월 7일 개정	2007년 2월 23일 개정
1981년 3월 10일 개정	2008년 12월 23일 개정
1984년 2월 28일 개정	2016년 2월 23일 개정
1985년 2월 22일 개정	2018년 2월 27일 개정
1988년 11월 9일 개정	2020년 2월 25일 개정
1991년 2월 18일 개정	2021년 2월 25일 개정
1994년 3월 22일 개정	2023년 2월 23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4-H본부(영문사용시 KOREA 4-H Headquarters) : 이하 ‘본부’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4-H이념에 입각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유능한 민주시민의식, 농심함양 그리고 자연·환경친화적 활동 및 기술을 연마케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적 미래세대의 육성지원과 더불어 모든 4-H인의 총화적 단합을 토대로 4-H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국가사회 발전과 세계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3길 31 한국4-H회관 내에 둔다.

**제4조 (지역본부)** ① 본부는 4-H활동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특광역시 및 시군구의 지역본부와 긴밀하게 연대하며 필요에 따라 계통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도·특광역시의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다.

1. 한국4-H경기도본부
2. 한국4-H강원도본부
3. 한국4-H충청북도본부
4. 한국4-H충청남도본부
5. 한국4-H전라북도본부
6. 한국4-H전라남도본부
7. 한국4-H경상북도본부
8. 한국4-H경상남도본부
9. 한국4-H제주특별자치도본부

10. 한국4-H서울특별시본부
11. 한국4-H부산광역시본부
12. 한국4-H대구광역시본부
13. 한국4-H인천광역시본부
14. 한국4-H광주광역시본부
15. 한국4-H대전광역시본부
16. 한국4-H울산광역시본부
17. 한국4-H세종특별자치시본부

**제5조 (사업)** ① 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지원을 한다.

1.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2. 4-H회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업
  3. 4-H회의 과제활동자금 · 교육자재지원 및 수용품 보급 사업
  4. 4-H활동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국제교류훈련 사업
  5. 각종 조사연구사업과 프로그램개발
  6. 신문, 도서 및 홍보간행물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업
  7. 4-H회원의 농업 · 과학기술 및 정보화에 관한 사업
  8. 4-H전문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의 발굴, 양성
  9. 4-H출신 지도자들의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10. 각급 지역단위 4-H본부의 조직육성지원
  11. 회관 및 연수장의 설치와 운영관리 사업
  12. 기타 본부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 ② 본부는 전 항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 · 용역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가 주관 및 주최하는 일반여행사업
  2. 청소년교류를 목적으로 청소년단체가 주관 및 주최하는 내외국 청소년 · 지도자를 위한 일반여행 사업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4.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공동협약에 의한 사업
  5. 그 밖에 법인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4-H규범제정)**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4-H운동의 기본원칙과 방침, 각종 단위조직의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한 한국4-H활동규범에 의거 시행한다.

**제7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부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부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8조 (운영원칙)** 본부의 명의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 제2장 회원

**제9조 (회원의 구분)** ① 본부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개인 및 단체로서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도·특광역시의 지역4-H본부(단, 법인이 아닌 4-H본부 조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촌지도기관장의 확인서로 갈음)에 등록된 회원

### 2. 4-H단체회원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한국4-H국제교류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 3. 후원회원

4-H운동을 특별히 지원코자 하는 개인, 법인, 기업체, 농업관련단체 단, 개인 및 농업관련단체는 이사회의 가입동의를 얻어야 함.

### 4. 평생회원

4-H활동을 후원하고자 소정의 평생회비를 본부에 납부한 인사

### 5. 준회원

전국대학4-H연합회

② 단체회원의 소속원(성인)은 지역4-H본부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부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관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 회비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부의 회원으로서 정관,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부의 명예를 심히 훼손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회 신고가 있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납부한 회비 기타 각종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여성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당연직이사 포함)

4. 감사 3인 이내

② 각 도 및 특광역시 지역4-H본부의 대표, 4-H단체회원 및 전국대학4-H연합회의 대표, 재정위원회 위원 중 2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시·도본부의 대표는 연차등록 회원 수 100인 이상으로 청년농업인회원 15인 이상, 학교4-H회 3개 이상이 조직된 지역본부에 한한다.

③ 선출직 이사는 회장, 부회장, 외부인사(비회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인사로 한다.

④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에게는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⑤ 회장, 부회장과 각 도 및 특광역시 지역본부의 대표는 필히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 본부 임원(당연직이사 제외)은 정관 제9조 ①항의 1호, 3호 회원 중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외부인사 2인 그리고 감사 1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부의 선출직 임원은 지역4-H본부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승계)** 본부의 임원 중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로서 당연직의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신임대표자가 자동적으로 그 임원의 직을 승계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새로이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징계 및 사임)** ① 본부의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본부의 명예와 위상을 심히 실추시켰을 때에는 총회에 해임 동의를 요청한다.

② 임원의 범위는 제13조에 준한다. 단, 사무총장의 징계는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동의를 위한 총회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④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임 :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2. 직무정지 :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만료와 동시에 복직한다. 직무정지의 시작일은 이사회 의결일로 하며, 직무정지의 기간 동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징계의 구분은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으로 한다.

⑤ 선출직 임원의 사직은 본부 사무국 사직서 접수일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다득표순으로 수석, 정책, 사업, 여성부회장이 되고 득표수가 동일 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며 여성부회장은 성별이 여성인 자로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정책, 사업, 여성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유고’라 함은 사망, 의식불명, 규정·정관·법률에 의한 직무정지, 구금기간 등 직접 결재를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석부회장은 회무를 총괄 보좌하고, 사업부회장은 본회의 사업활성화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부회장은 교육사업 및 정책개발, 여성부회장은 여성회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회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표결권을 갖는다.

**제19조 (감사)** ①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불법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 후원회장 추대 및 고문 등 위촉)** ① 본부에 사회적 명망가 1인을 명예회장 또는 후원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 후원회장 · 고문 ·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2. 명예회장 · 후원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명예회장 · 후원회장은 회장단회의, 이사회,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고문,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정 · 홍보 · 교육 분야 등의 전문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장 활동 조직

**제21조 (4-H회원)** 4-H회원은 만7세부터 만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 · 청년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제22조 (4-H지도자)** ① 4-H지도자는 제6조의 규범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시군, 도 · 특광역시, 중앙본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도자는 그 임무에 따라 육성지도자, 협조지도자, 전임지도자 등 3종으로 구분하되 그 자격과 임무는 규범으로 정한다.

**제23조 (4-H회의 구성)** 4-H활동을 하는 기초 조직단위를 ‘4-H회(club)’라 하고, 4-H회는 지도자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 (등록)** 4-H회원 및 지도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장 대의원총회

**제25조 (총회)** ① 본부에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이라 하며,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 및 특 · 광역시 4-H본부 회장과 회장이 지정하는 1인

2. 시 · 도 4-H본부에 회원등록 되어 있는 시군구4-H본부 회장

(단, 시군4-H본부 회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한국4-H국제교류협회 회장과 부회장 1인,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2인,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2인 및 사무국장 1인, 전국대학4-H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1인

4. 본부의 선출직 이사 및 감사, 농촌 · 청소년문화연구소장과 소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인, 사무총장

**제2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5. 해산결의
6. 기타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제28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 의결과정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총회의 제척사유)** 총회의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해임이 자신과 관련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부와 자신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 제6장 이 사 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과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
3. 사업실적 및 결산안
4. 규범,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과 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 ③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33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제척사유는 정관 제28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7장 사무국

- 제34조 (사무국)** ① 본부의 정관 및 정관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직제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장 연구소

- 제35조 (연구소)** 본부는 4-H회원 육성과 중장기적인 4-H운동 및 농정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농촌청소년관련 연구소를 설치 운영한다.

- 제36조 (연구소의 기능)** 연구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4-H운동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연구
2. 4-H회 조직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3. 4-H회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4. 국내외 4-H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보급
5. 청소년의 의식구조 등 조사연구
6. 4-H육성 및 농정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수행
7. 기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7조 (연구소 운영)** ① 연구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②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신문사

- 제38조 (신문사)** ① 본부는 모든 4-H인과 농업관련인사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농정소식과 폭넓은 첨단 농업과학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양·문화전달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농촌·농업·농업인 그리고 청소년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는 물론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코자 신문사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 ② 신문사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장 4-H재정위원회

- 제39조 (4-H재정위원회)** 본부는 4-H회원 육성과 항구적 4-H운동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관리를 위해 4-H재정위원회 (이하 ‘재정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본부의 후원회원과 4-H발전을 위해 재원을 지원코자 하는 기업, 기관, 개인 등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4-H육성재원조성에 관한사항
2. 본부적립재원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
3. 본부사업예산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제11장 자산 및 회계

**제41조 (자산)**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수입
3. 국고 및 농축수산단체의 보조
4. 기본자산에서 생하는 수입
5. 찬조 또는 기부에 의한 수입
6. 연수 및 프로그램 참가비 등 기타수입

**제42조 (재산의 구분)** ① 본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부 명의의 부동산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을 말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전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회계년도)** 본부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44조 (예산 및 결산)** ① 사업계획서와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당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장 보 쳐

**제45조 (위임)** 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 중 법인 및 단체의 대표는 회의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케 할 수 있다.

**제46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3인이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존한다.

**제47조 (해산)** ① 본부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8조 (기부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9조 (법령의 준용 및 규정의 제정 등)** ①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법인관계 조문과 일반 관례에 준한다.

②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1. (시 행 일)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기가입된 도4-H후원회는 3개단체 통합시까지 정관 제8조 1항의 1호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다만, 특·광역시4-H관련단체(4-H후원회, 4-H연맹, 클로바동지회 등)는 지역4-H본부로 통합개편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정회원으로 기가입된 시군4-H본부(강릉, 거창, 고성, 군산, 사천)는 이 정관 제8조 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말까지 이 정관 제21조 1항 1호의 대의원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상근회장은 이 정관 제11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2006년 2월 말)까지 구 정관 제10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2008.12.23>

1. (시 행 일)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기가입된 도4-H후원회는 도4-H본부로 본다.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특별회원은 후원회원으로 본다.

#### 부 칙 <2023. 2. 23>

1. (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정된 정관 제13조 제2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